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5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가. 민선7기,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사와 문화, 축제와 레포츠로 각인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구 신설

나.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청렴감사 등 인력 보강 및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2.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에 혁신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둠(안 제5조)

나.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식품위생과를 둠(안 제6조)

다.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를 둠(안 제7조)

라.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둠(안 제8조)

마. 교통환경국에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차량등록과를 둠(안 제9조)

바.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회계과를 둠(안 제10조)

사. 정원의 총수는 750명을 771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4급 7명을 8명으로, 5급 51명을 52명으로, 6급 이하 683명을 701명으로, 별정직 3명을 4명으로 조정(안 별표 5)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소요경비 : 세부내역 비용추계서 참고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9월 7일 ~ 9월 16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붙임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 및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4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자치행정국, 명품도시사업단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혁신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 담당관을 둔다.

② 혁신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기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4. 의회운영 및 법제 소송에 관한 사항
5. 하남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③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집단·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체 계약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④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경제국)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창업·취업지원(교육)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 및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8.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식품·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환경국)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건설 및 도로보수,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회계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2. 총무, 자치행정 및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4.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리, 계약,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명품도시사업단) ① 명품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명품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투자·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신장동·풍산동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6.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하철·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3조(소장) 보건소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친환경사업소, 하남시립도서관를 두고, 친환경사업소에는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제16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는 소장 및 관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① 친환경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행정 ·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 하남유니온파크 · 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9.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②하남시립도서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 구입 · 수집 · 정리 및 보관
2.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5.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8조(직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명칭 및 구역) 「지방자치법」 제4의2 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 설치와 관할 구역 등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정원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7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5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2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교육경비 보

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②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희망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1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⑧「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희망경제과장”을 “혁신기획관” 및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희망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장,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⑩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⑫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⑬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⑮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⑯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⑰ 「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⑱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주민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혁신기획관, 평생교육과장”로 한다.

⑲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⑳「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보감사담당관” 을 “청렴감사관” 으로 한다.

㉑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 을 “청렴감사관” 으로 한다.

㉒「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 을 “청렴감사관” 으로 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이영수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조일수 (790-5543)

[별표 1]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하남시청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보건소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친환경사업소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하남시립도서관	하남시 신장도서관 - 하남시 하남대로 740(신장동)
	하남시 나룰도서관 - 하남시 덕풍북로 180(덕풍동)
	하남시 덕풍도서관 - 하남시 역말로14(덕풍동)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검단남로 48(하산곡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신장동)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신장동)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덕풍동)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2(덕풍동)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서로 66(덕풍동)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하남대로 1037-4(풍산동)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망월동)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아리수로 531(망월동)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감북로 39(감북동)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학암동)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서하남로 490(춘궁동)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초이로 65(초이동)

[별표 2]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하남시보건소	하 남 시 전 역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1% 이내	25.2% 이내	31.2% 이내	25.7% 이내	9.6% 이상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2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771	77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762	762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27	3	4	5	13
6급 이하	701	70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3	3				
연구직 계	3	3				
연구사	3	3				
지도직 계	1	1				
지도사	1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매년 임금인상율을 3.2%로 전제함

※ 2018년 2.6%, 2017년 3.5%, 2016년 3.6%

○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율은 4.5%로 전제함

나. 추계결과

○ 5년간 소요금액 : 3,151,64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18년 (2개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방세 추가소요 금액		3,151,642	105,091	679,098	731,389	787,706	848,359
추가소요 인건비 (총 21명)	보수	2,933,829	105,091	630,546	679,098	731,389	787,706
	임금인상(3.2%)	90,520		20,177	21,731	23,404	25,207
	호봉 상승 (4.5%)	127,293		28,375	30,559	32,912	35,447

※ 2018년 일반직 8~9급 평균 보수지급 예정액 : 30,026천원 / 1인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①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는 시 ·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 ·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 ·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 · 부지사를 3명 두는 시 · 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

<table>
<tr><td>조 항</td><td>제6조(일자리경제국)</td></tr>
<tr><td>제출자 및 의견</td><td>O 제출자 : 징수과장
O 의 견
-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성남시청을 제외한 체납징수업무부에서 대부분 징수과로 사용하고 있고,
- 체납징수를 할 때 민원인이 징수과는 바로 인식이 되나 세원관리과는 생소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이며, 명칭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table><tr><th>당초 개정안</th><th>수정 의견안</th></tr><tr><td>제6조(일자리경제국)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u>세원관리과</u>, 농식품위생과를 둔다.</td><td>제6조(일자리경제국) ①----------<u>징수과</u>, ----.</td></tr></table></td></tr>
<tr><td>부서 검토 결과</td><td>[반영]
· “징수”는 조세나 수수료 등을 국민에게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이나, “세원관리”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 징수율 제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음
· 또한, 과(課) 명칭을 상급 기관(경기도)과 같이 세원관리과로 통일함으로써 업무처리시 민원인 혼선을 예방</td></tr>
</table>

<table>
<tr><td>조 항</td><td>제7조(복지문화국)</td></tr>
<tr><td>제출자 및
의견</td><td>O 제출자 : 복지정책과장
O 의 견
- 복지문화국내 5개과(81명) 중 3개과(57명)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시·군 복지관련 국에서도 복지부서가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음.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대상 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발굴 등 복지의 주요업무를 기획·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정책과가 복지문화국 직제 내에서 주무부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道 30개 시·군 중 복지관련국에 교육부서가 직제 순 첫번째인 시군 : 없음
<table><tr><th>당초 개정안</th><th>수정 의견안</th></tr><tr><td>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둔다.</td><td>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td></tr></table></td></tr>
<tr><td>부서 검토
결과</td><td>[반영]
· 민선7기 원활한 공약사항 추진 및 과(課)별 통솔범위 균형을 위해 평생교육과를 주무과로 조정 하였으나
· 복지문화국은 복지담당 3과, 문화체육 1과, 교육 1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업무를 주 기능을 담당하는 국(局)으로써, 복지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를 주무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순(順)으로 직제를 조정.(의견 반경)</td></tr>
</table>

<table>
<tr><td>조 항</td><td>제7조(복지문화국)</td></tr>
<tr><td>제출자 및 의견</td><td>O 제출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O 의 견
-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은 무조건 수혜대상자라는 낙인감을 줌. 과명에서 대상자의 구체적 명시를 제외하고 타시군과 같이 보편적인 사회복지과로 변경
<table>
<tr><th>당초 개정안</th><th>수정 의견안</th></tr>
<tr><td>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둔다.</td><td>제7조(복지문화국) ① ----------
사회복지과, ----------.</td></tr>
</table></td></tr>
<tr><td>부서 검토 결과</td><td>[미반영]
・2018. 3. 5.자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로 분과되었으며 사회복지과 명칭 재사용시 민원인의 혼선이 예상되며
・또한, 과(課) 명칭은 민원인 입장에서 부서의 기능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노인장애인복지과” 로 현행 유지)</td></tr>
</table>

<table>
<tr><td>조 항</td><td>제8조(안전도시국)</td></tr>
<tr><td>제출자 및 의견</td><td>O 제출자 : 도시과장
O 의 견
- 도시계획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정책적인 사항이 중요. 특히, 도시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도시과에 업무에 편입되면서 디자인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과 명칭을 도시정책과로 변경 (도시디자인팀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확대 시에는 도시디자인과 별도 신설 검토 필요)
<table>
<tr><th>당초 개정안</th><th>수정 의견안</th></tr>
<tr><td>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u>도시과</u>,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td><td>제8조(안전도시국) ① --------, <u>도시정책과</u>,----------.</td></tr>
</table></td></tr>
<tr><td>부서 검토 결과</td><td>[미반영]
・도시정책이란 도시성장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도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현재 도시과 주기능과 배치됨 (현재 도시과 명칭 유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정책과 명칭 사용 사례 없음
・단, 도시과 분장사무는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광고물 관리, 노점상 관리 등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확대 및 주요 기능이므로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td></tr>
</table>